

제2편 맹사성(태조조)



孟 思 誠 (太祖朝)

一三九六年(太祖五年) 八月 二八일 봉상시(奉常寺)에서 太祖가 현비(顯妃)의 존호(尊号)와 개국
一等공신 정희계(鄭熙啓)의 시호(諡号)를 잘못 지었다고 봉상시의 직원들을 옥에 가두고 예조의
랑 맹사성(禮曹議郎 孟思誠)등을 탄핵했다. 一三九六年 (太祖五年) 九月 五日 정희계(鄭熙啓)의
시호문제로 맹사성(孟思誠) 조사수(造士秀)등을 파직하다.

一三九九年(定宗一年) 九月 一〇일 우간의 대부(右諫議大夫)로 복직시켰다.

一四〇〇年(定宗二年) 八月 四일 孟思誠에게 좌산기상시(左散騎常寺=일종의 간관(諫官)에 任命
하다.

一四〇〇年(定宗二年) 十一月 十三일 孟思誠을 「좌산기상시」로 확정했다.

一四〇〇年(定宗二年) 二月 一三日 문하부 낭사(門下府 郎舍) 孟思誠이 다섯가지 일

즉 인재(人材)를 공정히 등용할 것등을 상언(上言)하니 윤허하다.

一四〇三年(太宗三年) 二月 二七日 孟思誠 · 權軫등을 좌우 사간대부(左右司諫大夫)를 임명했
다.

一四〇四年(太宗四年) 一월 八일 사헌부(司憲府)에서 노비사건을 변정(辨正) 한 것을 이유로 좌
사간대부 孟思誠을 파직했다.

一四〇四年(太宗四年) 一월 二三日 상기 사건으로 孟思誠을 온수(溫水)로 귀향보냈다.

一四〇四年(太宗四年) 二月 四일 孟思誠을 경외로 종편(從便)하도록 명하였다.

一四〇五年(太宗五年) 一월 一五日 孟思誠을 공조의 부대언(副代言)으로 임명하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一월 五日 王의 약을 잘못 조제한 정의감(典醫監) 이주(李舟)와 좌부대언(左副代言) 孟思誠등을 탄핵했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一월 一八일 사헌부에서 孟思誠·李舟 등에게 죄를 주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一월 二五日 다시 孟思誠을 左副代言으로 삼았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三월 一三日 太宗은 代言 孟思誠에게 말하기를 “내가 외출하는 것을 외인이 알지 못할터인데 諫官들이 외인에게 누설한 것이 아니냐?”하니 孟思誠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하니 太宗은 후일을 위하여 주의시켰을 따름이다 하였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五월 二일 經筵에서 대언(代言) 孟思誠 등을 불러 문과 重試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〇六年(太宗六年) 八월 三日 이조참의(吏曹參議) 孟思誠에게 낙안(樂安)에 보내어 내사(內舍) 박인(朴麟)등을 위로케 하다.

一四〇七年(太宗七年) 四월 一八일 文臣들을 친히 시험보게 했는데 孟思誠은 대독관(對讀官)을 삼다. 이때 吏曹參議

一四〇七年(太宗七年) 七월 二일 세자의 혼례를 위해 예문관 제학 孟思誠을 고기사(告期使) 부사(副使)로 삼아 가게 했다.

一四〇七年(太宗七年) 八월 八일 세자를 따라 입조(入朝)하는 제학 孟思誠등에게 쌀 六〇석과 상포(常布) 一〇〇필을 하사했다.

一四〇七年(太宗七年) 九월 一二일 세자 양녕대군이 명나라를 가는데 따라갈 孟思誠등을 위해 광연루에서 잔치를 베풀다.

一四〇七年(太宗七年) 九월 二五日 양녕대군을 하정사(賀正使)로 보내는데 예문관제학 孟思誠을 시종관(侍從官)으로 명단이 발표되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四월 二일 명나라 황제가 세자의 나이를 묻고 서각문(西角門)에 앉아서 하정사를 대하는데 孟思誠등을 뜰에 오르게 하고 접견하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四월 二일 명나라에 간 세자의 시종관 孟思誠등이 명나라 황제가 영국사(靈谷寺)에 가서 지은 찬불시(讚佛詩)를 속운(續韻)하여 올렸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四월 二일 명나라 황제가 세자 및 시종관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孟思誠은 은一정과 표리(옷감) 四필을 받았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四월 一六일 진헌색(進獻色)을 설치하여 동녀(童女)를 모으고 나라에 금혼령을 내리다. 이때 孟思誠은 한성윤(서울시장)이었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五月 一일 한성윤 孟思誠을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으로 삼았다. 즉 세자부.

一四〇八年(太宗八年) 九月 四일 예조판서이지(李至)와 한성윤 孟思誠을 보내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빈전(殯殿)에 올리게 하였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二月 七일 孟思誠을 대사헌(大司憲)에 임명했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三月 五일 조대립사건(趙大臨事件)일어남. 조대립은 개국공신 조준의 아들로 태종의 부마(사위)였는데 목인해(睦仁海)는 즉 관노(官奴)인데 활을 잘 쏘았다. 목인해의 꺾임에 빠져 발병범궐(發兵犯闕)한 것이다. 그래서 孟思誠은 조대립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어 일어난 사건이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三月 八일 조대립사건으로 오히려 孟思誠이 순금사에 가두었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三月 九일 목인해를 자식들과 함께 교살하다. 그리고 대사헌 孟思誠은 왕실을 모독한 죄로 매를 건디지 못하여 자백을 하고 아들(監察) 孟歸美도 의금부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三月 二일 孟思誠을 극형에 처하라고 판부(判付)하니 大臣들이 반대하는 청을 올린다.

一四〇八年(太宗八年) 三月 三일 孟思誠과 朴安信 등을 귀향보냈는데 맹사성은 한주(韓州)에 있는 향교의 재복(齋僕)으로 정배(定配)하였다.

一四〇九年(太宗九年) 一月 一일 세자 양녕대군이 孟思誠을 용서하기를 청하다.

一四〇九年(太宗九年) 四月 二일 강음현 토지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죄를 범했다고 검하여 벌을 주다.

一四〇九年(太宗九年) 四月 二일 조대립 사건에 왕이 언급하기를 「내가 만약 전일에 孟思誠을 극형에 처하였다면 어찌되었겠는가, 그때 大臣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청하였기에 내가 마지못해 따른 것이다.」 했다.

一四〇九年(太宗九年) 八月 七일 조대립사건으로 정배(定配)된 孟思誠을 외방종편(外方從便)하다.(약 九개월만에 귀향살이에서 석방 외방종편함)

一四一〇年(太宗一〇年) 八月 一〇일 孟思誠에게 직첩(職牒)을 도로 주어 京外로 나가게 하다.

一四二年(太宗十一年) 八月 九일 전 大司憲 孟思誠에게 米豆 二〇석을 하사하다.

一四一一年(太宗十一年) 一二월 九일 왕이 전대사헌 孟思誠 등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다.

一四一一年(太宗十一年) 一二월 〇일 孟思誠을 충주목사로 발령하다.

一四一一年(太宗十一年) 一二월 一九일 孟思誠이 공안부윤(恭安府尹)에 임명되었다.

一四一二年(太宗十二年) 五月 三日 孟思誠을 黃海道觀察使로 임명했는데, 영의정 河崙이 上言하기를 本國의 樂譜가 다 廢缺(廢缺)되어 오직 맹사성만이 악보에 밝아서 五音を 잘 어울리게 합니다. 지금 監司의 임명을 받아 장차 황해도로 가게 되었는데 원컨대 머물러 악공(樂工)을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王께 말하니 교대되기를 기다려서 악곡을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허락했다.

一四一二年(太宗十二年) 八月 二一日 監司 孟思誠등 諸都의 지방관을 곡식이 손상된 상황을 망보(妄報)한 이유로 면직시켰다.

一四一二年(太宗十二年) 八月 二八日 孟思誠 등 諸都의 守令들을 論罪하다.

一四一六年(太宗十六年) 六月 二四日 孟思誠을 吏曹參判으로 임명했다.

一四一六年(太宗十六年) 九月 二七日 孟思誠을 禮曹判書로 임명했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一月 二七日 禮曹判書 孟思誠이 대사례(大射禮)에 관한 글과 그림을 올린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二月 一二日 生員試(生員試)에 孟思誠등을 시험관으로 시켜 一〇〇인을 합격시켰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三月 一六日 영의정 남재(南在)예조판서 孟思誠외 一人등을 시켜 문과(文科)시험을 관장하도록 하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四月 八日 경희루에서 전기 文科 覆試를 시행케하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四月 二二日 孟思誠이 부친의 병 때문에 사직고자하나 윤허하지 않고 역마(驛馬)를 주며, 또 약과 술을 내려 주며 病이 낫거든 상경하다고 윤허하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六月 一六日 戶曹判書로 임명하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六月 二七日 戶曹判書 孟思誠에게 아뢰기를 과전(科田)=<공무원의 계급에 따라 十八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土地制度>이 골고루 지급되었는지를 묻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七月 一五日 太宗이 신하들에게 단자(緞子?)와 채견(綵絹=옷감)을 나누어 주었는데 호조판서 맹사성에게는 저사(?○絲) 一필을 주었다.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一二月 三日 맹사성을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하다. 아버지 병때문

一四一七年(太宗十七年) 一二月 一五日 왕은 맹사성에게 충청도 관찰사를 명한 이유를 사성에게 충청도 관찰사를 명한 이유를 뜻깊게 말하다 즉, 아버지 병환이야기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六月 五日 맹사성을 공조판서겸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으로 발령하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七月 六日 교서교감(校書校勘) 방문중(房文仲)을 계문(啓聞)하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八月 四日 공조판서 맹사성이 아비병으로 사직하다. 왕은 내약(內藥)을

하사하고 또 역마(驛馬)까지 동원해 주었다.

一四三年(世宗十三年) 三月

춘추관(春秋館)에서 삼가 王旨를 받들어 찬(撰)하여 올립니다.

감관사 대광보국 승록대부 우의정 영집현전경연사 겸 판병조사 세자부(大臣輔國崇祿大未議政府右議政領集賢殿經筵事兼判兵曹事世子傳) 臣 맹사성(孟思誠)

동지관사(同知館事) 가정대부 예문관 제학 집현전 제학 동지경연사 세자우빈객(嘉靖大夫藝文館提學集賢殿提學同知經筵事世子右賓客) 신(臣) 윤희(尹淮) 가선대부 중군 도총제부총제 세자좌부빈객(嘉善大夫中軍都摠制府摠判世子左副賓客) 신(臣) 신장(申檣)

기주관(記註官)

조산대부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散大夫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안지(安止)

조산대부 의정부 사인(朝散大夫議政府舍人) 신(臣) 윤경(尹炯)

조봉대부 의정부 사인(朝奉大夫議政府舍人) 신(臣) 조서강(趙瑞康)

조봉대부 봉상소윤(朝奉大夫奉常少尹) 신(臣) 이웅(李雄)

기사관(記事官)

봉직랑 사간원 좌헌납 지제교 겸 승문원 부교리(奉直郎司諫院左獻納知製敎兼承文院副敎理) 신(臣) 안수기(安修己)

봉직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奉直郎集賢殿副敎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이선제(李先齊)

봉직랑 사역원 관관(奉直郎司譯院判官) 신(臣) 박시생(朴始生)

무공랑 예문 봉교 세자 우부정자(務功郎藝文奉敎世子右副正字) 신(臣) 오신지(吳愼之)

무공랑 예문봉교(務功郎藝文奉敎 신(臣) 장아(張我)

통사랑 예문대교(通仕郎藝文待敎) 신(臣) 어효침(魚孝瞻)

종사랑 예문검열(從仕郎藝文檢閱) 신(臣) 김문기(金文起)

종사랑 예문검열(從仕郎藝文檢閱) 신(臣) 강맹경(姜孟卿)

종사랑 예문검열(從仕郎藝文檢閱) 신(臣) 이종검(李宗檢)

선덕(宣德) 六年 신해 三月 일 올립니다.

합계 三六권

孟思誠(世宗朝)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讓位年) 九월 一六일 공조판서 맹사성등이 상왕(太宗) 께서 흥년을 염려하여 각전(各殿)에 올리는 원도(遠道)의 진상(進上)을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회복하시도록 아뢰라.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양위년) 一〇월 二八일 上王(太宗)이 공조판서 맹사성등 고관들을 위해 주연(酒宴)을 베풀고 당부하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양위년) 二월 八일 대설이 내리다. 上王(太宗)과王大妃(太宗妃)에게 존호(尊号)를 올리는데 태종에게는 聖德神功上王이라 했고王妃에게는 厚德大王妃라고 했다. 이 의식에 맹사성은 독책관(讀冊官)을 했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양위년) 二월 一〇일 세종이 맹사성에게 말하기를 경이 관습도감 제조(慣習都監 提調)가 되어 사곡(詞曲)을 가르쳐 율조(律調)에 합하게 하였으므로 父王께서 기뻐하셨다. 이 때 출퇴근용으로 내구마(內廐馬) 한필을 내리셨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양위년) 一二월 一三일 과거제도에 대하여 맹사성·허조·변계량등과 의논하셨다.

一四一八年(太宗十八年 양위년) 一二월 二四일 세종이 수강궁에 문안하고 상왕께 헌수(獻壽)하였는데 맹사성도 이 연회에 참석했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一월 一일 황제 및 상왕(太宗)에게 하례하라. 이 자리에서 상왕은 후전진작(後殿眞勻)의 노래와 가사를 평하라. 이 자리에서 맹사성이 후전진작의 음탕한 내용을 아뢰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四월 一七일 맹사성에게 이조판서 발령을 내리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六월 八일 이조판서 맹사성 등에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게 하라.

一四一九年(世宗一年) 九월 二五일 맹사성에게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겸직시켰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九월 二七일 맹사성을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 提調)를 겸직케 하다.

一四一九年(世宗一年) 一二월 七일 맹사성에게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겸직케 했다.

一四二〇年(世宗二年) 一월 九일 이조판서 맹사성 등 신하들의 진언을 수용하다.

一四二〇年(世宗二年) 一〇월 一七일 맹사성에게 다시 이조판서를 임명하다.

一四二〇年(世宗二年 一二월 一五일 정분을 석방하고 맹사성·민교(閔校)를 직소(職所)에 나오도록 명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二월 五일 맹사성이 부친의 병환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五월 二一일 妻子와 사노비(私奴婢)를 임지(任地)로 동행하는 제도에 대해 맹사성이 세종에게 아뢰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〇월 二일 호조에서 대청관(大清觀) 수리하기를 청하였는데 맹사성이 이에 관한 경험을 진언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〇월 一〇일 맹사성 등 十一명이 신궁에 문안하고 술자리에 참석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〇월 二五日 이조판서 맹사성이 성(城)을 개축하고 보수하는 것을 진언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二월 一五日 사헌부 집의(執議) 박안신 등이 김점을 벌할 것을 간하다. 六曹堂上 맹사성도 이에 관한 참고 말을 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二월 七일 맹사성을 議政府 贊成事로 임명하다.

一四二一年(世宗三年) 一二월 二一日 上王이 진원능에 참배하는데 贊成 맹사성도 동참하다.

一四二二年(世宗四年) 一월 二二일 태상왕이 맹사성에게 이거이!의 일을 거론하지 말도록 하다.

一四二二年(世宗四年) 五월 一〇일 上王 太宗이 서거하자 맹사성을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 提調)로 삼다.

一四二二年(世宗四年) 八월 八일 평양군 조대립과 찬성사 맹사성을 승가사(僧伽寺)로 보내어 재(齋)를 올리게 하다.

一四二二年(世宗四年) 八월 二일 육전수찬(六典修撰)을 위해 맹사성을 제조(提調)로 임명했다.

一四二三年(世宗五年) 七월 一七日 전 찬성 맹사성에게 등창이 났으므로 약을 내리다.

一四二四年(世宗六年) 三월 二六일 유학(幼學) 곽장(郭璋)을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다.

一四二四年(世宗六年) 三월 四일 맹사성에게 판좌군 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符事)를 임명하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四월 二五日 맹사성에게 옷과 갓과 신을 하사했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七월 二一日 맹사성이 명나라 성절사(聖節使)로 가 있다가 베껴보낸 조서(詔書)를 의주통사 이성부(李成富)가 가지고 돌아오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七월 〇〇일 전건(前件)과 결국 같은 내용.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七월 二七日 성절사로 북경에 갔던 맹사성이 귀국하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七월 八일 문신 맹사성을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로 임명하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一〇월 一二일 영평군 윤계동과 박홍 등이 매를 훔친 일을 가지고 상소하였는데 판부사 맹사성과 총제 전홍에게 국문하게 하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一〇월 一五日 당상악(堂上樂)과 당하악(當下樂)을 일시에 함께 연주하는 일을 맹사성과 상의하게 하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明나라에서 進賀使가 약과 칙서(勅書) 가지고 귀국하여 경복궁에서 의식

대로 예를 행하는 자리에 맹사성도 참석했다.

一四二五年(世宗七年) 一二일 七일 맹사성에게 이르기를 고려사를 고치도록 하라고 이른다.

一四二六年(世宗八年) 三월 五일 세종은 의금부 제조 맹사성 등을 불러 화적의 무리를 잡았으면 빨리 문초하여 보고하라고 명하다.

一四二六年(世宗八年) 二월 二二일 조대림·민여익·권진·맹사성 등 많은 중진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죄주자고 하였으나 조종생만을 좌직시키고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一四二六年(世宗六年) 二월 二四일 상동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一월 二五일 맹사성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임명함.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一월 二七일 세종은 황희 맹사성을 불러 맞춤형인 양녕대군을 보냈다고 말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二월 二四일 황희 맹사성등을 불러 명나라 황제에게 해동청(海東靑=매의 일종)을 진헌(進獻)하겠다고 의논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三월 一四일 仁定殿에서 시행한 문과 전시(殿試)에 맹사성을 독권관(讀券官)으로 삼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四월 一九일 우의정 맹사성 찬성 권진을 시켜 벽제역에서 중국사신을 맞이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五월 四일 양녕대군을 만나는 일을 간(諫)하지 않은 신개와 맹사성을 파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五월 五일 대간들이 탄핵을 받은 우의정 맹사성의 사직을 청했으나 이간질로 윤허하지 않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五월 二一일 세종은 황희·맹사성등이 양녕대군의 궁중출입이 불가하다고 청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六월 九일 황희·맹사성등이 포로가 되어 도망은 명나라사람을 청대로 머물게 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九월 六일 세종이 한재를 근심하여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등을 불러 연좌(緣坐?)된 사람을 석방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직첩(職牒)을 거둔 것을 도로 주게 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六월 一七일 서달(徐達)이 신창의 아전을 죽인 것에 연루된 황희·맹사성 서선을 의금부에 가두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六월 二一일 황희·맹사성을 파직하고 서선의 직첩을 회수하는 등의 명을 내리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七月 四日 황희·맹사성·이맹균 등에게 관직을 도루 내리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七月 一五日 서달(徐達)의 형벌 경감에 대한 이맹균의 상소문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七月 一九일 맹사성·신상을 벽제역에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전송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七月 二五日 선군(船軍)의 보호 세자의 조현·서달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七月 二七日 조현(朝見)할 때의 조복과 관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八月 四일 새로 짓는 세자궁의 조례를 받는 장소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八月 二六일 강화에 목장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八月 二六일 병조에서 갑사(甲士)의 거관(去官)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八月 二九일 온정(溫井)에 병을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을 곡식을 주어 구휼하도록 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九月 四일 사직단의 신위를 고쳐 만드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다. 이때 領樂學이었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九月 一八일 태조의 외조모 조선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의 묘를 수축하는 일 양녕대군의 조현(朝見) 문제등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一〇월 一九일 세자의 양관(梁冠)에 대해 명나라의 예부에 자문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二월 二일 아버지의 상중에 기생을 데리고 논 이효성(李孝誠)을 율에 따라 처벌하도록 육조(六曹)에서 결정하다.

一四二七年(世宗九年) 二월 一〇일 세자를 조계(朝啓)에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월 一二일 王이 친히 종묘에 제향하는데 맹사성은 종헌을 하였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월 一六일 양녕대군을 논죄(論罪)하자는 의견을 律의 八議를 들어 거부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월 二二일 죽은 판부사(判府使) 아버지 이화영(李和英)의 아들 이안정(李安貞)이 아버지에게 죄를 진 일이있어 충의위(忠義衛)에 벼슬을 주고자 자문하니 맹사성은 예를 들어가며 불가하다고 아뢰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월 二二일 세종이 황희와 맹사성을 불러서 죄인 윤이(閔伊)에게 벌할 것을 자문하자 장100대와 유(流) 三千里를 결정하도록 아뢰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월 二二일 황희·맹사성등이 윤이와 김불노(金佛老) 등에 대한 처벌이

가벼움을 지적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월 二五日 세종이 六曹에게 자문하기를 조관(朝官)을 진제검찰과(賑濟檢察官)으로 삼아 각도에 파견하기로 묻자 우의정 맹사성 등이 옳다고 상언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二월 一三日 함길도 경원(慶源)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군졸(軍卒)로 하여금 방호케 하고 또 진(鎭)에 대장·대부등을 더 두도록 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四월 六일 세종이 한승순(韓承舜)이 도적에게 빼앗겼던 물건을 찾아서 돌려보내는 勅書중에 요동위차(寮東委差) 동녕위진무(東寧衛鎭撫) 왕손(王孫)에게 보낸 물건도 기록되어 있으니 황화·맹사성등과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자문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四월 一四일 세종을 배반한 홍택·김불로·신장수 등이 양녕대군과 결교(結交)한 것은 모반한 짓이니 용서할 수 없다고 맹사성 등이 諫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四월 二三일 文科의 초장(初場)에 강경(講經)하는 것의 불가함을 상서하니 제술(製述)을 위주로 하게 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四월 一일 대사헌 최부가 귀양간 조말생(趙末生)을 요성한건을 논의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四월 一일 오경(五經)이 토(吐)를 달아 가르치는 것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四월 一일 시호(諡号) 제정을 여러사람이 하지 말고 오직 봉상시(奉常寺)의 일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一四二八年 (世宗十年) 四월 一일 수범(首犯)이 감죄(減罪) 원면(願免)되면 종범(從犯)도 이와 같이 됴을 입법화 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六월 二二일 황후(皇后) 책봉(冊封)의 진하시(進賀時)에 왕세자의 양관(梁冠)을 청(請)하는 문제등을 논의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八월 七일 중국무역검사절창성(昌盛)의 탐욕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八월 一四일 함경도 갑산(甲山)의 방비를 위하여 상·부천호(上副千戶) 六인을 배치하여 유능한 관리를 함흥진 북방에 제수하도록 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八월 六일 중국사절 창성(昌盛)이 떠나자 맹사성 등이 홍제원에서 전송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九월 七일 경사(京師)에 가 있는 사은부사(謝恩副使) 성계의 모상(母喪)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九월 一四일 차남(次男)이 사묘(祠廟)를 세우는 등 문제 등에 관한 일을 논의하다. (禮法問題)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九월 一七일 양전제도(量田=척량하는것)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九월 一七일 왕세자의 시강(侍講)에 대해서 의논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〇월 四일 벽제(碧除)에서 중국의 사신을 위로하여 보내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〇월 二〇일 함경도 경원부·용성(龍城)등의 방비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一〇월 二二일 의금부(義禁府)에서 조계생(趙啓生)·안숭선(安崇善)·송포(宋褒)·조서강(趙瑞康)등의 죄안(罪案)을 가추어 치죄에 대해서 논의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二월 三일 맹사성과 황제의 출정(出征)을 문안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二八年(世宗十年) 三월 六일 평안도 철산군(鐵山郡)에 있는 새로 쌓은 가산성(架山城)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一월 三일 황화·맹사성이 학문진흥책을 올리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一월 六일 태평관(泰平館)을 (중국사신을 영접하는 곳) 옛터에 고쳐짓게 한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三월 二二일 함길도 경성·경원등지의 곡식의 수송방법을 논의하다.

一四二九年 (世宗十一年) 四월 一八일 세종이 말하기를 내가 매양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송사(訟事)하는 일에 재집(宰執)의 죄는 반드시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의 죄만 다스렸는데·경(卿)등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하문하셨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四월 二三일 늙은 대신들은五日에 一 번씩 상참하도록 하라고 명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四월 二四일 사신(使臣)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四월 二七日 (修文殿과 晉文閣)의 회복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五월 一四일 使臣이 바치는 물고기젓을 주본(奏本)에 기록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五월 二六일 성균관에 행차하여 시험(입학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맹사성은 독권관(讀卷官)을 삼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六월 九일 학문권장책에 대해 맹사성의 말을 따랐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六월 一九일 중국사신 창성(昌盛)의 탐욕스러움을 탓하다.

一四二六年(世宗十一年) 六월 二四일 우의정 맹사성·여천부원군 민여익·찬성 권진등에게 궤장(几杖)을 내리다. 대신으로 七〇세에 이르면 하사한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六月 二九일 중국에 진하사(進賀使)를 보내는데 권도(權蹈)를 보내어 표전(表箋)을 가지고 가서 진하하게 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七月 二일 세종은 농사의 풍흉을 묻고, 또 時賦로 取士하는 일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七月 一八일 세종은 흥덕사(興德寺)에서 大臣들이 보여 명나라에 진헌할 공물에 대해 논의하게 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七月 二五日 맹사성과 김효손의 노비와 양민의 군분책에 대한 의견을 듣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七月 三일 황희와 맹사성이 지의한 명나라 사신을 임명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八月 四일, 세자비 간택문제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八月 二一日 평안도는 명나라와 국경이 연접하였는데 국민이 적게 살고 있으니 이주시켜 살도록하는 일을 의논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九月 一일 황희와 맹사성을 불러 말하기를 명나라로 보내는 계품사(計品使)의 편의를 논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九月 一七日 황해도 순위량(巡威梁)의 兵船 정박지 선정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一〇월 一六일 개성 유후사(留後司)에서 개성성의 축조를 건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一〇월 二〇일 경사(京師)즉 명나라에 상공(常貢)이외에 큰 賀禮나 수은할 때는 금은공(金銀貢)외에 금안장을 바칠 것인가에 대해 여부를 물어 맹사성이 대답했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一二월 九일 일본으로 인한 일 때문에 신하들과 논의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一二월 二일 병조에서정년이찬 선군(船軍)의 처리문제에 대해 제신들의 의견을 듣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一二월 一五日 명나라 사신이 요구하는 물건을 줄 것인가에 대해 신하들과 의논하다.

一四二九年(世宗十一年) 一二월 二六일 사신과 물품을 서로 주고 받는 예를 금지할 것을 논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一월 一一일 모화루(慕華樓)에 거둥하여 使臣을 전별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一월 一二일 맹사성등이 使臣을 전송하고 돌아오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一월 一五日 세종이 말하기를 진내사(眞內史)는 명나라 황제가 사랑하는 환관(宦官)이므로 내가 후하게 대접하고자 하니 그 접대의 예를 의논하라 하셨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一월 二一일 대사헌 이승직이 양녕대군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의 부당함을 상소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三월 二四일 진상(進上)한 노루를 훔쳐간 별감 문타내(文他乃)등을 비호한 환지(宦者) 김연(金衍)의 처벌을 논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四월 六일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사복마(司僕馬)를 도살한 무리를 벌줄 것을 건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四월 九일 산천단순심별감(山川檀巡審別監) 정척(鄭陟)이 기자묘 신위의 명칭에 대해 아뢰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四월 一七일 상정소(詳定所)에서 기자묘비의 편액을 기자비로 쓸 것을 아뢰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四월 一八일 병조판서 이수(李隋)가 죽었다. 황희와 맹사성이 예장(禮葬)하는 지위는 아니나 평소의 그의 업적으로 보아 예장하도록 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四월 二五일 상정소(詳定所)에 전지(傳旨)하여 입학한 종친의 관복제도를 상정하여 아뢰게 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四월 二七일 맹사성에게 명하여 太宗實錄을 감수케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四월 二八일 맹사성등이 헌의(獻議)하기를 명나라 황제가 서원군(瑞原君)李진(?)을 후하게 대접한데 대해 사례를 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五월 八일 兵曹에 별시위(別時衛)를 군사와 성중관(成衆官)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의하라고 전지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五월 二五일 司憲府에서 풍속을 무너뜨린 오진(吳眞)의 아내차씨(車씨)등의 처벌을 건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五월 二七일 집현전에서 文臣의 권학조건 일이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六월 一八일 광패(狂悖)한 행동을 일삼는 혜령군(惠寧君)이지(李祉)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七월 二七일 태제소이(太庠小二)등이 禮曹에 글을 보내 米穀과 저포(苧布)등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七월 二八일 명나라 황제가 내려 준 허리띠를 예복 위에 차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八월 一〇일 戶曹에서 공법(貢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어 아뢰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七월 三〇일 宗親들이 使臣과 연회할때 술을 따라 권하는 禮節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八月 一八日 大司憲 李縑直이 통사 원민생(元閔生)의 치죄(致罪)를 건의했으나 듣지않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八月 二十四日 두 使臣이 토표(土豹)를 잡기 위해 咸吉道로 가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九月 二日 아악(雅樂) 연주에 대한 타당성등에 대해 의논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一〇월 一三日 吏曹에 命을 내려 소윤(少尹) 박호문(朴好問)등을 국문케 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一〇월 二三日 使臣에게 추위를 피할만한 옷을 줄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신문고를 마음대로 치게끔 하라고 代言등에게 이르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二월 二日 황희·맹사성등과 현안에 대해 의논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二월 四日 황희 맹사성등과 군자고(軍資庫) 신축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二월 六日 통사(通事) 애검(艾儉)등이 성수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보고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二월 七日 황희 맹사성등과 成均館에서의 考試실시여부를 의논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二월 一三日 황희·맹사성등을 불러 皇帝께 올릴 글의 원고를 기초하게 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二월 一五日 황희·맹사성을 불러 백성동원의 기한을 정할 것을 논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三월 一日 吏曹에서 刑曹에 佐郎·正郎을 한사람씩 더 둘 것을 건의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三월 二日 맹사성·허조등을 불러 정조(正朝) 동지(冬至)등 조하(朝賀)받을 때의 禮에 대해 의논하다.

一四三〇年(世宗十二年) 三월 一五日 모화관(慕華館)에 거동하여 명나라 사신 창성(昌盛)을 전송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월 九日 강무(講武)할때 의정부의 거가(車駕)수행을 그만두라 전지(傳旨)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월 一〇日 야인(野人)들의 조공(朝貢)에 대한 답례품의 수량을 禮曹에서 의논케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월 二일 맹사성·허조등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일을 의논케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월 三일 맹사성등과 종친의 품계·시료(臣僚)들의 가옥 크기에 대해 의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월 一四일 명나라사신 동권두(童權豆)가 강무(講武) 수행건을 예조판서 신상(申商)과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월 二一日 맹사성·권진·허조 등이 조계(朝啓)를 정지하는날에 예궐(詣闕)을 면케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월 二四일 兵曹에서 아뢰기를 목장(牧場)의 監牧官이 驛丞兼任여부를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월 三〇일 세질을 강무(講武)에 참가시키는데 대하여 맹사성등이 불가함을 아뢰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二三일 대신들과 알타리(幹朶里) 도독(都督) 첨사(僉事) 동맹가첨목아(童猛哥沾木兒) 즉 咸吉道都節制使의 보고에 의한 계서(戒書)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二五日 文科初章에 두가지 經書를 택하여 출제할 것을 청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二五日 각도 영전(營田)의 어염(魚鹽)을 선군(船軍)에게 주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六일 무례한 일본사절(日本使節)에 대한 答禮에 관해 맹사성등과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一四일 제주동남감목관(濟州東南監牧官) 고준(高峻)이 상소한 조건에 대한 논의내용.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一七日 무묘(武廟)을 세우고자 사직(司直) 박아생(朴芽生)의 상서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一九일 禮曹에서 자제를 입학시키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一九일 평안도 도절제사(都節制使)의 계달(啓達)에 대한 논의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二〇일 太宗實錄을 보는 것에 대한 논의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二三일 주인 김사청(金士淸)을 고발한 중 해심(海心)에 관한 논죄와 요동(遼東)에서의 우척(牛隻)의 교환에 대한 논의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二五日 遼東에서의 牛雙무역에 대한 조치와 진헌색(進獻色)설치에 대한 논의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三월 二七日 詳定所에서 한식날 失火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四월 三일 代言·宗親·議政府·六曹 二品이상의 관원이 문안드리다. 民戶와 宗廟의 화재예방책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五월 一日 단오별제(端午別祭)를 광효전(廣孝殿)에서 행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五월 三일 밀·보리의 작황을 묻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五월 一二일 함길·평안감사의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문제와 최대 기간문제등을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五월 一六일 서계(書契)가 없이 구두로 청한 까닭에 종정징?에게 증석만 주게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五월 一七일 경주 임내(慶州 任內) 자인현(慈仁縣)·여묘살이(廬墓)하는 張씨에게 쌀 一〇석을 하사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五월 二〇일 예빈시(禮賓寺)의 종을 훔쳐 전매하고 함흥부 관인을 위조한 김계생(金桂生)의 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五월 二三일 도망해온 명나라사람 파을수(波乙愁)등을 돌려보내게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五월 二九일 일본 좌무위(左武衛)의 사인(使人)을 인견할 시기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六월 八일 宗廟와 양전?에 천신할 (薦新)배·밤·대추·은행·능금류의 禮法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六월 一三일 신개 등이 억울한 매질에 희생된 것을 상소하여 이르기를 형조와 의정부 관리들의 죄를 청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六월 一九일 공신 이현보(李玄寶)의 자손의 서용(徐用)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六월 二四일 대전(大殿) 불필요한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직임(職任) 제도를 감축하는 문제 등을 교지(教旨)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六월 二七日 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 연사종(延嗣宗)이 행보하기가 어려우니 초하룻날 조참(朝參)때에나 나오도록 하는 일에 대한 논의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七월 四일 관리를 任命하는 법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七월 二일 상정소(詳定所 都提調) 맹사성 등이 논의하여 아뢰기를 품관(品官)과 이민(吏民)들이 수형을 고발하는 것을 금한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七월 一三일 양주의 호장(戶長) 신입(申立)이 함두언(咸豆彦)의 어미를

죽인 것을 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七月 一九일 사신이 북방을 갈때 호송하는문제와 해청(매)을 잡는 문제·의장에 관한 문제등을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七月 二〇일 성혜옹주(誠惠翁主) 이방간(李芳幹)의 딸·죽다. 그의 장례 의식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七月 二一日 새별요?의 역사가 끝날때까지 부역하는 직분없는 중의 거처를 한정하도록 결정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七月 二二일 사신(使臣)의 연향(宴享)때 은반(銀盤)을 쓸것인지 주홍반(朱紅盤)을 쓸 것인지 등을 의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二일 사신회례에 사용할 음악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四일 使臣이 청한 兵卒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七日 모련위(毛憐衛=中國地名)의 위치를 묻고 병든 사신을 영접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一二일 열병(熱病)을 알는 使臣 즉 전염병을 알는 使臣을 접촉하는 문제등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一三日 명나라 使臣 윤봉의 처소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一三日 윤봉의 처소를 다시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一五日 양홍달(楊弘達)은 太祖·太宗 그리고 世宗에 이르기까지 노비봉직 수고하였는데 전에 부린 노비의 반을 주도록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一七日 使臣 一行中 죽은 두목(頭目)에게 제문(祭文)을 지어 치제(致祭)하는 것을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一九일 하마연(下馬宴)에서의 세자와 안평대군·임영대군과의 禮節을 정하지 못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一九일 원한을 품고 폐단을 만드는 사신 윤봉·창성등을 위로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二〇일 사신을 접대하는 함길도를 규찰하기 위해 유은지(柳殷之=도총제)를 도순찰사(都巡察使)로 삼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二四일 맹사성등이 사신일행을 위한 치성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八月 二八일 부사정(副司正) 윤중부(尹重富)에게 使臣을 환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부사직(副司直)을 제수하는 것을 의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一일 윤중부에게 관직을 주는 것에 대해 다시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三일 맹사성에게 좌의정으로 임명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八일 황희·하윤이원 등 고금인물의 옳고 그름을 평논하고 의논하게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二二일 지금 경원부(慶源府) 사람이 해청(海靑-독수리)을 잡은 사람의 논공행상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二四일 詳定所에 세자가 회예연(會禮宴)에 참여하는 의식을 논하게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二五일 맹사성 등에게 성 쌓기를 감독하는 일을 의논하라 명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二六일 맹사성 등에게 지평(持平) 이사증(李師曾)을 국문하도록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二六일 사신접대를 위해 강원도 흥원창(興元倉)의 조세를 함길도 안변으로 수송하도록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九월 二八일 좌대언(左代言) 김종서(金宗瑞)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순평군(順平君)이군생(李群生)이 김세민과 더불어 불화하였다고 하니 그 실정을 인덕전(仁德殿)시첩(侍妾)들에게 들어본 뒤에 옥사(獄司)를 판결함이 어떨까 명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〇월 一일 刑曹에서 김척(金陟)의 죄를 복계(覆啓)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〇월 一일 박연(朴堧)이 상언한 아락의 官服制度의 정확성을 중국에 알아보려 하다. 또 유사눌(柳思訥)이 가사를 지어바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〇월 一七日 효과적인 지방관의 임명·관리정책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〇월 三〇일 강무(講武)할 때 王과 신하의 의복을 당제(唐製)에 의거 의주에 기록토록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一 일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말하기를 병조의 무비사 낭청(武備司·郎廳)의 임기연장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五日 수원부 관관을 다시 두는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五日 대호군(大護軍) 박연(朴堧)이 상언하기를 여러의식때의 음악 사용에 대해 상언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五日 황희·맹사성등이 사직신(社稷神)의 위패(位牌)·칭호를 논의하

여 아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七일 황희·맹사성등을 불러 다양한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八일 사신이 해청(海靑)을 가져갈 두목들에게 털옷을 주기를 청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九일 유구국 사신의 반열(班列)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一〇일 大司憲 으승이 건이의 사건을 해명하는 상소를 올린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一〇일 군자(軍資)와 의창(義倉)에게 바친 함경도의 세를 피곡으로 바치게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一五일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王室儀式)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一五일 평안도 황해도 각 길의 수레와 소(牛)에 대해서 운반수단을 의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一五일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것에 대해 의주의백성들에 대한 논의를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二월 一九일 황희·맹사성을 불러 여러 가지 당면문제를 의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二월 二일 명나라 사신 창성(昌盛)등이 피로되었던 명나라 사람을 거느리고 돌아오니 보제원(普濟院)에서 연회를 베풀게 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二월 五일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을 불러 여러가지 국사를 논의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二월 一一일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을 불러 여러가지 제도와 얽힌 국사를 자문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二월 二〇일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과 여러가지 나라의 당면문제를 의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二월 二三日 使臣에게 護送軍을 허락할지를 의논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二월 二四일 공주에 사는 소경 박생의 고소에 대해 박안신(朴安臣)에 상소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다.

一四三一年(世宗十三年) 一二월 二四일 황희·맹사성과 당면한 나라일에 대해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월 一三日 부윤 황자후(黃子厚)의 아들에게 안옹주(安翁主)의 딸을 아내로 삼게하는 일에 대해 자문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월 一八일 원묘(園廟)의 問數를 정하고 坐向 등을 宗廟의 例에 따르

기로 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월 一九일 맹사성·권진·윤희 등이 새로 지은 八道地理志를 올리다. 이때 맹사성은 領春秋館事를 겸임했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二월 一일 세종은 조참(朝參)을 받고 황희·맹사성·권진에게 의논하기를 죄인 이직(李直)과 신호(申浩)의 문제를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二월 六일 중궁(中宮)과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인신(印身)의 크기를 의논케 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二월 二일 책봉도감제조(冊封都監 提調) 맹사성 등이 중궁(中宮)·왕세자·왕세자빈의 인(印)의 규격을 아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二월 一二일 박안신(朴安信)을 무고한 惡人 맹인(盲人) 박생(朴生)의 일을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二월 一五일 議政府에 論議하도록 명하기를 司憲府에서 박곤을 전라감사로 임명하지 않고 박안신(朴安信)을 보내도록 결정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三월 三일 예문관 봉교(奉敎) 장아(張莪)와 성균관 박사 권칠임(權七臨)·교서랑(校書郎) 이종의(李從義) 등이 상서하기를 실행(失行)한 사람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금하도록 상소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왜인(일본인) 변상(邊相)의 난언사건(亂言事件)을 결정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三월 一四일 진산군(晉山君) 하운(河崙)의 서손(庶孫)에게 과거응시자격을 주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三월 一五일 상정소(詳定所)의제조 맹사성등에게 묻기를 세종이 즉위한 이래로 선왕이 만든 법을 개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실정이 다른 것을 고치는 일에 문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三월 二五일 詳定所 提調 맹사성 등을 불러 당면문제 四개 제도를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三월 二七일 議政府와 六曹를 불러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을 다시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三월 二八일 詳定所 提調등을 불러 會禮樂에 관한 것을 묻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二일 세종이 하향(下享)을 거행하기 위해 宗廟의 齊典에 나아가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三일 요동(遼東)과의 소 무역건에 간여한 윤봉에게 상을 주는 일

을 의정부와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一二일 함길도 도체찰사가 황희·맹사성등에게 장계(狀啓) 하기를
五가지로 구분하여 요충지(要衝地)의 중요성을 건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一二일 독권관(讀券官) 맹사성 등이 전시(殿試)에서 대독관(對讀
官)안송선·유상지·설수에게 책의 글제를 명하기를 세종에게 주청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一三일 황해도 통로정책(通路政策)에 대해 백성들에게 묻고 장계
(狀啓)하라 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一三일 명나라와의 문호 의주(義州)에 토관(土官)을 신설하는 문
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一六일 武科會試에 합격한 윤간(尹諫)과 염순양(廉順良)의 전시
(殿試)능시에 관한 건을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一八일 詳定所 提調 황희·맹사성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관직제
수를 일체 상제(喪制)에 따라 엄격히 제한 하기로 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二二일 함경도 사신(使臣)을 접대할 양식을 수로로 운반할지를
묻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二二일 판경성군사(判鏡城郡事) 최태산의 지방관 임명과 궤장(几
杖) 하사하는 제도에 대하여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二四일 사간원(司諫院)에서 상피(相避)의 법을 어겼다하여 문선사
(文選司)의 낭청을 탄핵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四월 二五日 절제사(節制使)가 지방관을 겸임하게 한 법의 문제점과
이정간(李貞幹)의 모친을 포상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五월 二일 박연(朴堧)등이 會禮때의 악공·동남에게 관복을 올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五월 一四일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는 장리(贓吏)의 자손을 서용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五월 一四일 사신(使臣)에게 대접해야 할 양곡의 수송과 소 교역의 일
을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五월 一七일 지리(地理) 이양달(李陽達)에게 서운관 판사(書雲觀判事)
를 제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五월 二一日 명나라 사신들에게 의복 등을 줄 것인지를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五월 二八일 소(少)를 바치라는 명나라 황제의 칙서(勅書)에 대해 논의

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六월 三일 주·현(州·縣)에 있는 어용전(御容殿)에 대한 일과 소를 교역하는 일·양곡공여(糧穀供與)의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六월 一四일 정사를 보다 육전(六典)의 잘못을 바로 잡으라 명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六월 一六일 사초(史草)를 유실한 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六월 一八일 의정부·육조에 명하기를 소근소사와 극언(小斤召史)의 간통사건과 사신들의 의복 청구건을 논의하라.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六월 一九일 소근소사(小斤召史) 사건과 중궁(中宮)의 유모열의 면천(免賤) 요구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六월 二五일 세의정(황희·맹사성·허조) 등을 불러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六월 二七일 판부사(判府使)고 이화영(李和英)의 처의 봉록외 인호(人戶)를 영유건을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七월 四일 詳定所에 장형(杖刑)을 세 번 이상 범한 수령의 파출(罷黜) 여부를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七월 七일 吏曹에서 정역찰방(程驛察訪)을 경직(京職)으로 임명하여 임무에 오래 두는 것이 편부(便否)를 아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七월 一九일 禮曹에서 宗貞澄이 진상한 물건과 서계(書契)를 수납하지 말 것을 의뢰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七월 二七일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불러 함길도에 영북진영(寧北鎭城)을 쌓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八월 一일 세종이 양노연(養老宴)에 노인이 출입할 때에 자리에서 내려서 기다릴 것을 말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八월 二일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이 도첩(度牒)이 없는 중을 금지시킬 것을 이르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八월 一〇일 세종이 고려사를 보고 춘추관에 수찬방법에 관한 처리여부를 전지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八월 一六일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명나라 사람 장동아(張童兒)에게 모의(毛衣)와 모관(毛冠)과 신을 주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八월 二八일 송·원의 제도에 따라 악(樂)을 제정할 것에 관한 유사눌(柳思訥)의 상서문 검토.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八月 二八日 兵曹에서 중국인 임가라(林加羅)에게 무략(武略)있는 者와 통사(通事)를 보내 강금을 탈환할 것을 아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九月 一日 예조에서 집현전에서 아뢴 단유(檀유?)의 제도에 대해 가부를 의논할 것을 아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九月 一日 詳定所 提調들이太祖·太宗에 대한 文舞·武舞의 가사에 관해 아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九月 一日 영흥부원군(驪興符院君) 민제(閔濟)의 제사를 받드는 문제를 안송선(安崇善)등과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九月 四日 안송선·김종서에게 명하여 최석이(崔石伊)·유을부(劉乙夫)의 극형 여부를 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九月 九日 兵曹에서 창성(昌城)이북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강변(江邊) 농사짓게 하기를 아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九月 一七日 禮曹에 원묘(原廟)를 봉선전으로 고치도록 명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九月 二五日 최석이(崔石伊)와 유을부(劉乙夫)가 돈을 녹여 그릇을 만든 죄를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九月 三〇日 유관(柳寬) 황희·맹사성·권진에게 노루 한 마리씩을 하사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〇월 四日 세종이 약재·서책의 무역에 관해 논의할 것을 말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〇월 一〇日 工曹에서 오부(五部)의 각방에 집이 백한 곳은 문을 들 내지 셋을 설치할 것을 아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〇월 一二日 세종은 황희·맹사성등을 불러 전소윤(前少尹) 김토(金土)를 환관으로 제수하고 田土를 줄 것을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〇월 二四日 慣習都監提調 맹사성등이 근청정지가(觀天廷之歌)의 가사 중 폐금소저란 글귀에 대해 아뢰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〇월 二四日 황희·맹사성을 불러 全羅監事 朴安臣·安東府使 朴瑞生の 축국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〇월 二五日 경연에 나아가 권맹손(權孟孫=참찬관)에게 일러 세자의 사부에게 세자에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시킬 것을 말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一월 三日 지신사 안송선(安崇善) 참찬관 권맹손(權孟孫)에게 원묘(原廟)에 나아가라고 명하고 황희·맹사성 등과 전각(殿閣)에 대해 의논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一월 一五일 사헌부에서 결송(決訟)하는 관리들이 처결을 지연하는 것을 죄주자고 청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一월 八일 황희·맹사성등을 불러 이징옥(李澄玉)이 매를 놓아 준 죄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一월 二三일 맹사성 지신사 안숭선(安崇善)에게 宗室의 譜牒을 꾸미게 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一월 二七일 예의정형(禮義政刑)과 가부 근의를 일절 구양수(歐陽修)의 論한바에 따라 따를 것에 관한 정인지의 상서문.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二월 九일 승정원에 九월에 대열(大閱) 하고자 하니 정부의 대신과 의논하여 아될 것을 전지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二월 九일 평안도 감사가 강계 절제사 박초(朴礎)가 군사를 이끌고 야인(野人)을 추격하였음을 치보(馳報)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二월 一〇일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명 황제께 주문(奏聞)하는 것의 타당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二월 一三일 세종이 좌우 근신에게 모리(謨利)하는 자를 극형에 처해 후환을 막음이 마땅하다고 이르다.

一四三二年(世宗十四年) 一二월 一三일 안숭선(安崇善)에 명하여 의주의 관리가 도망한 중을 잡고자 사람을 중국의 연산과절(連山把截)로 보냈는데 중국 경내에 이른 것이 위법이니 이를 논의하라 명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월 一一일 上護軍 홍사석이 여연 절제사 김경(金敬)과 강계절제사 박초(朴礎)에게 죄를 줄 것을 아뢰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월 一三일 황희·맹사성등을 불러 여연과 강계 인민들의 구휼방법을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월 一六일 의정부와 六조판서·삼군 도진무 예문관 대제학등을 불러 목채(木冊) 진무소(鎭撫訴) 신문고(申聞鼓)등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二월 五일 詳定所에 한검(韓劍)과 한창수(韓昌壽)는 太祖의 유복지친(有服之親)으로 모두 높은 품계에 올랐는데 그 아우 한금강(韓金剛)에게 치조(致早) 치전(致奠)등을 행하여 돈목의 뜻을 보일 것을 의논케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二월 一五일 의정부 六조 등에게 파저강(婆猪江) 야인(野人)에 대한 집대방식과 토벌할 계책등을 진술하게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二월 二一日 황화·맹사성 등을 불러 平安道에서 쓸 병장잡물(兵仗雜物)의 수량 등을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二월 二七日 의정부·六조 등을 불러 주장(主將)과 함께 권략(權略) 있는 자를 골라 정할 것을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二월 二八일 의정부·六조 등을 불러 야인(野人)들을 안심시켜 뜻하지 않을 때 공격할 것을 논의하라.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三월 一四일 의정부·六조 및 도진무 등을 불러 명나라 황제의 칙서(勅書)에 관해 논의하라.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三월 二三日 咸吉道 감사가 용성(龍城)에 거주하는 향화인(向化人)을 단천·북청 등처에 옮길 것을 치보(馳報)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四월 二일 맹사성·허조 등과 김모적(金毛赤)의 패역(悖逆)한 죄를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四월 二四일 신천(信川) 군수 권자안(權自安)이 현리(縣吏) 최곤(崔坤)을 죽이니 곤의 아들 최사민(崔思敏)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四월 二七日 임금이 안송선(安崇善) 등에게 북경에 가는 사신을 영송하는 군사수를 더할 것을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五월 三일 황화·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五월 四일 좌대언·김종서(金宗瑞)에게 세 의정과 명나라 권두(權豆)등에 대한 위로책을 논의하도록 명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五월 六일 의정부와 六조를 불러 咸支道 새땅을 초안(招安)하는 계책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五월 一六일 최윤덕을 우의정으로 이순봉에게 판 중추원사 등 인사를 단행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五월 二一日 지신사 안송선이 조석강(趙石岡) 대신 홍사석을 강계(江界) 부사로 임명할 것을 아뢰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五월 二二일 황화·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의창(義倉)의 대여곡(貸與穀)에 관해 국사를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五월 二八일 황화·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도록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六월 一일 맹사성·허조 등이 파저강(波底江) 정벌에 공이 있는 군사의 승급이 너무 과함을 아뢰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六월 六일 영의정 황희·좌의정·맹사성·우의정·최윤덕 등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六월 一一일 영의정·황희·좌의정·맹사성·우의정·최윤덕 등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六월 一四일 임금이 이승선(李崇善)에게 임영대군(臨瀛大君)의 부인 남씨를 내어 보낼 것에 관해 전교(傳敎)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六월 一八일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安崇善으로 하여금 국사를 논의하게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六월 二〇 일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국사를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六월 二四일 右同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六월 二九일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이 일본과의 교통문제과 저장의 정벌문제를 말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七월 二일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함길도 도절제사 성달생(成達生)의 치보(馳報)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七월 二一일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강녕전(康寧殿) 경회루·역상(歷象)등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월 一三일 황희·맹사성·권진 등이 강도를 처결하는데 때를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아뢰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월 一七일 안승선(安崇善)에 야인(野人)에게 죽은 지만(池萬)의 배상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를 명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월 一七일 황희·맹사성과 일본에 갔던 회례사(會禮使) 이에·김구경 등의 위로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월 二一일 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월 三〇일 승문원(承文院) 제조를 부르고 安崇善·金宗瑞에게 명하여 중국 칙서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월 일 安崇善에게 명하여 배준(裴俊)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의논케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월 일 이조판서 허조가 유구국 오보야고(吾甫也古)등을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月 일 정사를 보았다 세종이 사신(使臣)들의 행로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月 일 황희·맹사성 등을 불러 야인(野人)에게 짐승과 가산을 돌려 줄 것과 사신 호송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月 일 임금이 안승선에게 使臣의 친족을 칭하는 자를 법에 의해 징계할 것을 이르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月 일 임금이 注書 姜孟鄉을 시켜 사건목록을 가지고 세 의정의 집에 가서 의논하게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月 二七日 상정소 제조 황희와 허조가 신자의 사용에 관해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八月 일 평안도 도안무사 최윤덕이 왕반거(王半車)와 보개(甫介)가 조현(朝見)하기를 원한다고 치보(馳報)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九月 一〇일 金宗瑞에게 명하여 교지를 받자와 첩문(牒文)을 보내는 것에 관해 의논케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九月 一三日 咸吉道 都巡撫使 심도원(沈道源)이 경원의 성을 쌓는 것에 관해 아뢰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九月 一六일 安崇善에게 命하여 장영실(將榮實)에게 護軍의 관직을 더해 줄 것을 의논케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九月 一七日 刑曹에서 의심스러운 죄를 조목으로 진술하니, 정부와 六조로 하여금 의논케 하라.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九月 二〇일 진헌사(進獻使) 상호군 허지혜(許之惠)가 왕흠(王欽)·사신 왕무(王武)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보고하랴.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九月 二一日 평안도 감사 이숙치가 두 중국 사신(使臣)이 가지고 온 勅書를 베껴서 보내오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〇월 九일 해청(海靑=매) 진헌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〇월 一一일 선유(宣諭=중국 勅使) 윤봉(尹鳳)에 대한 회례(會禮)로 줄 선물 궁중요리하는자들을 바치는 문제 등에게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〇월 一二일 종(奴) 천외(天外)와 간달(干達)의 죄를 처벌에 관한 형조의 상소문.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〇월 一三日 세종이(安崇善)·金宗瑞·孟思誠 등과 해청(매) 진헌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〇월 二〇일 황희·맹사성 등에게 명하여 속전(續典) 부민고소조(部民告訴條)등 당면 문제점에 대해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〇월 二三日 절도죄와 서북면의 백성의 부민 고소법 등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〇월 二四일 同伴에 대해 다시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〇월 二九일 변방지방에서 야인문제 등을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一월 一日 국고(國庫)의 포화(布貨)로 금·은의 매입·사신 배준(裴俊)의 사건·행례 연회를 베푸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一월 二일 使臣 昌盛에 방(榜)을 쓰는 종이를 청구한 건 및 의주와 인산(麟山)사람들의 입보(入保)문제 평안도 연변 주민들이 강을 건너가 경작하는 문제등을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一월 一二일 창성(昌盛)이 요구한 방지(榜紙)·경호대화포·人藝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一월 一九일 영북진(寧北鎭)을 알목하(幹木河)에 경원부(慶源府)를 소다로(蘇多老)로 옮겨 영토를 확장시킬 것을 의논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一월 二二일 영북진(寧北鎭)·경원진(慶源鎭)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병조의 의견을 묻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一월 二六일 세종이 安崇善에게 최진(崔眞) 이만주(李滿住)등의 죄를 덮고자 음모를 꾸민 상황을 열거하여 말하게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二월 九일 세종이 황희·맹사성 등에게 교지를 내려 어리가(於里加)와 이의산(李義山)·허파회(許波回)를 더 이상 벌하지 말라고 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二월 一三日 朴安信이 가져온 勅書에 개·인삼의 진헌 문제와 자제들을 중국학교에 입학 교육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二월 一四일 새 매를 진헌할지를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二월 一六일 야인(野人)들이 군대를 청해 원한을 갚으려 하는 것과 이만주(李滿住)에게 빼앗긴 人口 재물의 송환문제 등을 논의하다.

一四三三年(世宗十五年) 一二월 二六일 그릇을 훔친 김인순(金仁順)과 소로(小老)의 형벌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一월 六일 金宗瑞가 건의한 경원부(慶源)·영북진(寧北鎭)입주자의 배정

과 城壁축조·軍의 배정 등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一월 一〇일 설순 등이 상소한 신석견수찬(辛石堅) 부수찬, 남수문(南秀文)등에게 주어진 중국어학습을 그만 두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一월 一二일 국경사람들의 사적 왕래문제·야인의 귀화문제·굶주린 백성들의 구제상황 등에 대한 사찰 등을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一월 二〇일 이지숭(李之崇)의 첩의 아들을 충의위(忠義衛)에 입적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 등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一월 二六일 명나라 황제에 인삼 一천근을 진헌하는 문제와 강계사람 정치신(鄭致身)·함영지(咸永之) 치득림(車得林)등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二월 二六일 태감 윤봉(尹鳳)이 청탁한 일과 당체(堂體)의 갖의 매매문제 대사헌 고약해(高若海) 등의 처벌문제등을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二월 二七일 근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푸니 왕세자 이하 여러 종친·부마·재상·승지 등이 잔치에 입시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三월 七일 종정성(宗貞盛)이 마필을 청한 것과 왜인이 기아로 도망하여 온 것에 대한 그 유치문제 등을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三월 三〇일 명나라의 야인 정벌에 대한 군량미 원조·왜인의 동과 납·철의 매매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四월 一四일 윤경동(尹敬童) 유흥준(兪興俊)등의 처벌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五월 八일 절에 올라간 부녀의 처벌문제·야인이 주는 물건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등을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五월 八일 한학강습인을 승문원으로 옮길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六월 一일 강계(江界) 등지에 石城을 쌓는 문제등의 국경방어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六월 五일 東宮의 금·은그릇 도둑으로 소친시(小親侍) 한의(韓義)를 고소한 종(奴) 차송(車松)의 진위와 무덤을 판 김호인의 처벌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七월 六일 전국에 비온 상황과 곡식의 작황을 묻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八월 五일 전국의 곡식의 작황을 묻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八월 七일 민심언(閔審言) 박곤(朴坤)등의 관직을 발령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八월 二五일 사노(私奴) 밀동이 개오미(介吾未)를 때려 죽인 죄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八월 二六일 우의정 최윤덕을 평안도에 파견하는 문제, 원접사를 파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一〇월 二七일 中軍소속의 내금위(內禁衛) 추의위 별시위(別侍衛) 사금(司禁)등의 예속체계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四年(世宗十六年) 一二월 一六일 맹인(盲人) 지화(池和)와 신생(信生)에게 실직(實職)을 제수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一四三五年(世宗十七年) 一월 一七일 변경의 방어책에 대해 논의하다.

一四三五年(世宗十七年) 二월 一일 孟思誠 좌의정으로 致仕하다.

一四三五年(世宗十七年) 二월 四일 대행(大行) 상제(喪制)를 의논하다.

一四三五年(世宗十七年) 三월 一二일 제주 우마적(牛馬賊)과 연좌되어 귀양간 조수?에게 직첩을 돌려주는 문제등을 논의 하다.

一四三五年(世宗十七年) 四월 一六일 황희등과 함께 군사모집에 관해 논의하다.

一四三五年(世宗十七年) 八월 六일 한해를 걱정하여 범죄인 중 직첩을 돌려줄 사람이 있는지 아뢰게 하라.

一四三五年(世宗十七年) 二월 一四일 정부와 六조판서에게 전폐(錢幣)와 미포(未布)를 상용할 방책을 논의하다.

一四三六年(世宗二十年) 五월 一四일 관복(冠服) 도포 등의 윤후를 받은 것에 대해 치사할 것을 의논하다.

一四三六年(世宗二十年) 一〇월 四일 좌의정 맹사성 졸하다.